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1.4.20. 공포, '22.4.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법률에서 위임한 청소년쉼터 강제 퇴소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다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의의무를 부과하고 본인이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상 사후 관리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 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요건의 선후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함.(안 별표1)
- 다.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과처분 및 가중처분의 적용시점과 누적차수 적용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용과 준수의 혼란 방지
(안 별표3)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 당 없 음

다. 합 의 : 0000000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퇴소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계속하여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퇴소 청소년이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상 상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 관련)의 제1호 일반기준 가목 후단 중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를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가목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의1.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가. <u>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 과정 이수</u> 나. <u>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 3년 이상</u> 2)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가. <u>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취득</u> 나. <u>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 5년 이상</u> 3)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가. <u>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 소지</u> 나. <u>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u> 4) <u>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u>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1) <u>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u> 2)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가. <u>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u> 나. <u>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u> 3)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가. <u>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u> 나. <u>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u> 4) <u>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u>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행정업무 수행직원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리원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조리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u>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 과정 이수</u> 나. <u>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u>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u>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u> 나. <u>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u>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u>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관련 전문자격 소지</u> 나. <u>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u> 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u>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종사</u> <u>나.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u> 5)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람
관리업무 책임자	1)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u>가.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 과정 이수</u> <u>나.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u> 2)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u>가.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u> <u>나.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u> 3)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u>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관련 전문자격 소지</u> <u>나.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u> 4)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u>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종사</u> <u>나.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u> 5)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u>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 취득</u> <u>나.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u>
상담원	1)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u>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u> <u>나. 상담, 교육, 심리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u> 2) 청소년상담사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호·자립 지원요원	1)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관련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2)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u>가.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사업)학, 교육학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u> <u>나. 청소년(지도), 복지, 교육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u>
의사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간호사	1)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u>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간호사 자격 취득</u> <u>나. 정신건강간호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u> 2)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u>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u> <u>나. 의료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u>
치료사· 임상심리사	1)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u>가. 심리치료 또는 임상심리 관련 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u> <u>나. 심리치료 또는 임상심리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u> 2)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u>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취득</u> <u>나. 정신건강임상심리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u> 3)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u>가. 「자격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심리치료, 인지치료, 특수치료 관련 공인 자격증 소지</u> <u>나. 심리치료, 인지치료, 특수치료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u>
행정업무 수행직원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산원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u>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u>

	<u>나. 전산 관련 분야(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사무용 전산기기) 경력 3년 이상</u>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조리원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조리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설 관리원	건축, 전기, 기계,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운전원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란 의학, 간호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을 말한다.
2. "청소년치료재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 및 교육·활동·지도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다. 의료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 심리상담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가.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박사 과정 이수 나.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 3)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가.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나.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 4)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가. <u>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또는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 소지</u> 나. <u>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u> 5) 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보호·상담원	1) 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가. <u>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u> 나. <u>청소년상담복지 또는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u> 3)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u> 가. <u>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u> 나. <u>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u>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소년보호 분야"란 교정보호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사회학, 교정학 및 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3.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4. "소년보호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소년보호 관련 기관·단체에서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년 관련 분야에서 소년보호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다. 「소년심판규칙」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경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u><신 설></u>	<u>제16조의2 (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퇴소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계속하여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퇴소 청소년이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상 상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u>
[별표 3]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별표 3]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

현 행	개정안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u>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u> <u><신 설></u> 나. ~ 라. (생 략) 2. 개별기준 (생 략)	----- ----- <u>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u> <u>가의1.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u> 나. ~ 라.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272